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⑩ - 포천메나리

‘메기는’ ‘지르는’ ‘받는’ ‘내는’ ‘맺은’ 소리 등으로 구성

포천메나리보존회, 포천종합고등학교 메나리 전수활동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지정번호: 무형문화재 제35호 - 지정년월일: 2000.8.21 - 거주지: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보유자: 포천메나리 보존회

옛날부터 대종을 이루는 노동요는 일의 성격 일터의 환경 지역의 특성 등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불려 지는데 포천은 산과 들이 고르게 있어서 노래도 고르게 전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논밭 때 불리워지던 ‘메나리’는 많이 불리워졌는데 힘차면서 구성된 가락이 멋있고 가락의 내용이 매우 건전하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35호로 지정받은 포천 메나리보존회가 위치한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포천 메나리 전수관 전경.

포천메나리는 이 고장의 가장 특색있는 소리로 그 창법이 독특하게 이어지는데 소리부르는 사람이 5개 조로 나뉘어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부름으로써 한 개의 소리를 완성하는 방법으로 그 분담역할이 ‘메기는 소리’ ‘지르는 소리’ ‘받는 소리’ ‘내는 소리’ ‘맺은 소리’로 구분되어 ‘메기는 소리’를 띄우며 받는 형식

과 ‘메기는 소리’를 이어 짝을 채우는 두가지 형식으로 이는 다른 지방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창법이다. 농사를 짓는데도 ‘뚝뚝음’(입산과 하산) ‘논갈이’(소물) ‘모심기’(하나 하나) ‘방아타령’(긴방아 자진방아) ‘새뚫기’ ‘메나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에 입맞을 때의 농요는 나무꾼 소리와 씨매질 소리

모내기 소리를 불렀고 김매기 소리에 포천메나리가 불리워졌다. 발굴된지 몇 년만에 경기도 최우수상을 받고 1992년 구미시에서 개최된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문화부장관을 받으면서 포천메나리가 인정을 받아 경기도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이 되었고 가산면에 ‘포천메나리 보존회’가 있으며 포천종합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수를 하고 있다.

그 당시 조사를 위해 참여한 명단은 다음과 같다. ▶포천문화원장 최중규 ▶국사편찬위원회 조사위원 이효종 ▶포천실업고등학교장(포천 메나리 전수학교) 박수철 ▶포천군 농촌지도소장 조원복

고종자는 ▶한국예총 인천지회장(전 인천대학 교수) 김순재 ▶인천 교육대학교수 정동화 ▶연천초등학교 교장 김종민이며 조사 참가자들은 ▶김인환 ▶윤동순 ▶이상훈 ▶윤달용 ▶이종찬 ▶이영만 ▶김봉길 ▶백종국 ▶이상길 ▶이봉용 ▶백준환 ▶한준식 ▶서정원 ▶백용현 ▶오영수 ▶백천근 ▶이지식 ▶류인성 ▶윤원용 ▶류재윤 ▶이보문 등이며 실무간사는 ▶문화공보실장 박영근 ▶문화원 사무국장 류기수 등이다.

특별기획 ●●● 경찰수사권 독립에 관한 연구 ⑬

독일과 프랑스의 경찰제도



노 영 민 포천경찰서

경찰은 경찰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수사 및 공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경찰은 경찰에 의한 수사 후에 언제든지 직접 수사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경찰에 대한 일방적 지시권을 가지는 반면 경찰은 경찰에 사건을 지체 없이 통보 한 후에는 검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단지 특별히 허용된 긴급경제처분권만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수사의 개시 시점은 주로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고소·고발이 주로 국민에 가까이 위치한 경찰에 접수되고 경찰은 범죄예방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쉽게 범죄혐의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수사에 있어서 경찰에 비해 경찰은 인적·물적 정보도 충분하고 수사의 기술적 및 조직 등의 면에서 우월한 것도 그 이유이다. 더 나아가 경범죄 또는 중범죄에 있어서는 경찰이 수사의 진행을 거의 독자적으로 행하고 심지어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거의 종결된 상태에서 경찰에 처리결과를 송치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사법제도와 검찰제도는 유럽의 다른 나라들과도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 프랑스 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이삼제라는 것과 검찰이 법원의 하부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특징은 검찰제도의 발전역사에서 비롯된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잦은 혁명 등으로 인해 정국이 불안하여,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상명하복의 관계라 할 수 있으며, 검사는 범죄수사와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활동을 지휘하며, 검사 자신의 직무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부여된 권한과 특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경찰력을 동원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프랑스 혁명 이전부터 이미 형성되었던 것이며, 혁명 후 1808년 제정된 프랑스 치죄법(Le Code d'Instruction Criminelle)에 의해 명문화·구체화되었다.

이처럼 경찰과 사법경찰은 조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분리된 조직의 현행체제를 유지하면 수사 있어서 상호협력관계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수사·내무부 장관 연석회의의 공동선언문에서 경찰과 검사와의 관계는 수사에 있어서 상호협력관계(Zusammenarbeit)임을 천명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찰과 검찰은 조직상 독립된 기관으로서 효율적인 범죄투쟁을 위해 형사사건의 조수를 행함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가지고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검찰은 수사절차의 전 과정에 걸쳐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셋째로 검찰에게는 본 지휘를 제시한 기준에 따라서 범죄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할 법률상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눌 수 있다. 국가경찰로는 내무부 소속의 국립경찰과 국방부 소속의 군인경찰을 두고 있으며, 자치경찰은 인구 1만 명 이상의 읍·면과 자치단체도 코뮌(Commune) 중 1만 명 이상의 일부시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읍·면장은 의회에서 선출되며, 그 지역내의 경찰관을 동시에 요구하거나 또는 절차상의 이유나 행정적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경찰에 대하여 자신이 인지하게 된 범죄사건 및 그 사건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검찰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검찰이 경찰을 수사에 개입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즉시 인지 못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한 사실을 경찰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수사가 종결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치한다는 것이다.

넷째로 경찰은 ① 법률적 관점 또는 사실적 관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건이나 중요한 사건, ② 검찰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또는 절차상의 이유나 행정적적인 이유에서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 경찰에 대하여 자신이 인지하게 된 범죄사건 및 그 사건에 대하여 취한 조치에 관하여 검찰에 즉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검찰이 경찰을 수사에 개입시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경찰이 즉시 인지 못한 사건이 있을 경우에 검찰은 그 사건에 대하여 수사 개시한 사실을 경찰에게 통지한다는 것이다. 여섯째로 수사가 종결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치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사법경찰도 다른 국가의 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발견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 또는 직권으로 하여 경찰에 비조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경찰관리의 독자 수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의수사가 원칙이나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도 제한적 강제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체포 등 피의자신방구속에 대해서도 24시간동안 경찰의 보호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프랑스검찰제도의 근대적인 모습은 치죄법에 의해 갖추어졌으며, 그 후 1959년 형사소송법이 개정·성립되었다. 이러한 검찰은 법무부 장관에 종속되어 검사일체의 원칙에 의해 움직이며, 행정권의 일부로서 사법에 대한 정부의 감독기능을 가지고 있다. 프랑스의 검찰은 각 형사법원에 부치한다. 프랑스의 사법제도는 원칙적으로 2심제이며, 1심법원은 배심제를 채택하는 중죄원(Cour d'Assises)과 법관만이 재판하는 경죄법원(Tribunal Correctionnel)이다. 2심법원으로는 공소원(Cour d'Appeal)이 있고, 우리나라의 즉결심판에

대한 대응하는 위경죄법원(Tribunal d'Instance)이 있다. 또한 하급심에서의 법규의 적정한 적용여부를 심리하는 파해원(Cour de Cassation)과 예심판자를 수행하는 예심판사가 있다. 검찰청은 이에 대응하여 그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설치되어 있다. 1심법원에 대응하여 공화국검사(Procureur de la République)와 그 대리가 있으며, 2심법원에 대응하여 검사장(Procureur General) 및 그 대리가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경죄법원에 대하여는 경부(Commissaire de Police)가 대개 검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법률적전문직을 논하는 파해원검사는 법원검사(Avocats Generaux)로 법무부 장관의 소속에 있으며, 다른 검사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법경찰도 다른 국가의 사법경찰과 마찬가지로 범죄를 발견하고 범인을 특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형사소송법이 정한대로 범인을 체포하고 범죄를 수사하며 증거를 수집한다. 수사를 함에 있어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 또는 직권으로 하여 경찰에 비조사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경찰관리의 독자 수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입의수사가 원칙이나 사법경찰관에 대해서도 제한적 강제 처분을 허용하고 있으며, 현행법의 체포 등 피의자신방구속에 대해서도 24시간동안 경찰의 보호유지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時論

자극 우리 지역사회는 포천의 고유한 정체성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는 수도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 북한과의 최전방 경계선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러 문화의 속성이 혼재해 왔던 특성을 다소 노출하여 왔다. 이러한 일면들이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상당한 순기능적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고유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느 정도 저해되는 역기능적 요소로 작용되어 왔다. 우리는 포천이 근에서 시로 승격된

남 고유한 브랜드로 이미지화 되는 문제를 우리는 지금 숙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몇몇 지역에서 만든 ‘시민대중’이라는 이름의 광범한 보편명의 브랜드 이름이 시간의 흐름과 함께 아무런 의미와 가치를 창출하지 못한 채 역사속으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 예를 상기하면서 ‘시민의 종’ 제작 관계자들은 ‘시민의 종’에 부여할 이름의 중요성을 철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기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시민의 종’의 브랜드 이미지의 조건으로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로 고유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고유성이란 함은 포천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가장 포천적인 독특한 개체성을 의미하는 반면, 보편성은 포천을 뛰어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일반성을 뜻한다. 포

체성의 한양(비한양)과 관련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 독특한 상품의 소유/비소유 단계로 전이된다고 하겠다. 한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의 기호가 지역민들이 그 사회에 소속된 집단임을 깨닫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하는 적절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포천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이미지의 창출이 시로 승격된 이 시점에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다. 이 같은 관점에서 포천이 배출한 선각자 동생 이해조의 대표작품의 제목인 『자유종』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요즘 학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동생 이해조와 함께, 이해조의 출신 내려고 그의 작가 의식의 지향점을 살펴보면 그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로서의 거취를 충분히 지닌다고 하겠다. 왕족



공 명 수 대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상화 될 수 있는 자본의 요소를 갖추고 수 있다. 『자유종』이 각종 인형으로 제작되거나 『자유종』이 새겨진 티셔츠를 비롯하여 의류나 포천이 생산하는 상품의 브랜드로도 활용될 수 있다. 『자유종』과 관련된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세계의 각종 종을 전시하는 종 박물관의 건립이나 북한과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북한의 자유를 물리는 평화기념을 설립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문화산업의 산업의 자본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유종』이 산업을 자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더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시민의 종’의 브랜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보하고, 또한 다른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차별화될 수 있는 고유성과 보편성을 함께 갖춘 이미지를 창출하는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지금은 ‘시민의 종’의 이미지로서 가장 의미 있는 포천의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연결되는 고유성과 보편성을 갖춘 브랜드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숙고할 때인양 부연하고 하겠다. 가칭 ‘포천 시민대중’ 추진이나 그것의 반대의 의견에서 한발 물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포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신중히 숙고해야 하리라고 본다.

‘자유종의 브랜드이미지 가치’

직후부터 지금이야말로 그 동안 다소 혼란스러웠던 지역의 정체성을 아우르는 적절한 시점이라고 여기고 시민의 정신을 한 곳에 집어넣는다는 의미에서 ‘시민의 종’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시민의 종’이 제작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의미와 취지가 완전히 변질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단순히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시민의 종’을 주도하려 한다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칭 포천 시민대중’의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처럼, ‘시민의 종’ 제작은 시민의 성공이든 시민의 열매든 예산낭비에 불과하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시민의 종’ 제작에 관계한 당사자들이 저마다 처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우리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근원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우리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의 창출 계기로 이것을 활용한다면 우리 지역의 정신이 한 단계 더 성숙할 것으로 본다. ‘시민의 종’이 포천의 특수한 정신을 담을 수 있는 과거와 현재 속에 살아 숨쉬는 포천만이 지

니라는 지역의 전통과 역사 속에 살아 숨쉬고 있는 고유한 문화적 요소가 인간 개개인의 집단 무의식 속에 잠재해 있는 보편화된 원형의 속성과 아우르질 때 ‘시민의 종’의 이미지 가치는 생명력을 지닌다고 하겠다. 둘째는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브랜드 명사가 아닌 회소성을 갖춘 고유명사로 태어날 때 ‘시민의 종’의 이미지는 신비감이 더해지면서 가치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 셋째로 그 브랜드 이미지가 상품으로 전이될 수 있는 의미의 소용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그 브랜드의 기호의 소유가 곧 상품의 구매로 연결될 수 있는 가치 구현적 속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 후기산업사회에서는 브랜드 이미지의 소비를 통한 집단의 묶음현상이 흔하게 일어난다. 브랜드 이미지가 대중의 의식 속에 토착화 되면 자연스럽고 그 이미지의 소유여부는 물건의 분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한 지역의 특수한 브랜드의 이미지의 소유/비소유는 단지 그 자체에 머물지 않고 고유한 정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대표 李文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갈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쥬·썩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